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위원장

1. 조 례 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도로법」 제91조에 맞게 도로복구공사의 범위를 현행 굴
착공사에서 타행위로 인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파손·훼손까지 확대하여
차량 및 건설기계의 통행·진입 등 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까지 확대하
여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확립하
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로복구공사의 정의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파손·훼손된 도
로 또는 도로시설물을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공
사로 확대 (안 제2조제3호)
나.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통행·진입·주차, 적재물의 상·하차·운반·
적치 및 건축·철거·토목공사와 관련한 차량·장비의 출입 등으로 도로
또는 도로시설물을 파손·훼손하는 행위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타행위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다. 제3조제2항 신설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
라. 도로 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타행위로 도로 또는 도로시설물이 파손·
훼손된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철거비·
자재비·시공비·폐기물처리비 등 구체적인 복구비용의 범위와 산정근거
를 마련함(안 제4조의2).
마. 원인자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도로교통 또는 보행자
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시장이 우선 복구한 후 원인
자를 추적·확인하여 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0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nickel99@korea.kr

라. 문 의 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파손·훼손된 도로 또는 도로시설물을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을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 또는 도로시설물이 파손·훼손되거나 그 기능이 저하되어 도로복구공사 또는 시설물의 복구가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타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한다.

1. 차량 또는 건설기계 등의 통행·진입·주차 등으로 도로 또는 도로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적재물의 상·하차, 운반 또는 적치 등으로 도로 또는 도로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건축공사·철거공사·토목공사 등과 관련한 차량 또는 장비의 출입
으로 도로 또는 도로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도로 또는 도로시설물을 파손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제4조 전단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타행위로 인한 도로파손의 복구비용) ①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
지 않는 타행위로 도로 또는 도로시설물이 파손·훼손된 경우 원인자
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에는 철거비, 자재비, 시공비, 폐기물처리비
및 그 밖에 원상복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③ 복구비용의 산정기준 및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원인자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도로교통 또
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도로
를 복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야 하며,
원인자가 확인된 경우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복구에 든 비용을 징
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굴착으로 파손된 부분을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 6. (생략)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도로복구공사”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파손·훼손된 도로 또는 도로시설물을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원인자부담금)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u><신설></u>	제3조(원인자부담금) ① ----- ----- -----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 또는 도로시설물이 파손·훼손되거나 그 기능이 저하되어 도로복구공사 또는 시설물의 복구가 필요한 ----- ----- ----- -----. ② 제1항에 따른 타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한다. 1. 차량 또는 건설기계 등의 통행·진입·주차 등으로 도로 또는

② ~ ⑤ (생략)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는 도로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적재물의 상·하차, 운반 또는 적치 등으로 도로 또는 도로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건축공사·철거공사·토목공사 등과 관련한 차량 또는 장비의 출입으로 도로 또는 도로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도로 또는 도로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3항-----

-----.

-----.

제4조의2(타행위로 인한 도로파손

<p>제8조(원인자 확인) ① (생 략)</p> <p>② 원인자를 확인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리고 도로교통상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적으로 도로를 복구하고, 원인자를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될 경우 부담금을 추징해야 한다.</p>	<p>의 복구비용) ①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타행위로 도로 또는 도로시설물이 파손·훼손된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에는 철거비, 자재비, 시공비, 폐기물 처리비 및 그 밖에 원상복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p> <p>③ 복구비용의 산정기준 및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p> <p>제8조(원인자 확인)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원인자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도로교통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도로를 복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야 하며, 원인자가 확인된 경우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복구에 든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p>
---	---

관 계 법 령

☑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자동차등록번호·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이전·말소에 관한 정보

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김 창 연

[붙임 3]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6.08.18.]

(일부개정) 2026.08.18 조례 제3024호

관리책임부서명 : 도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301-3733, 300-5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26. 8.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6.>

1. (삭제 2015.10.30.)
2.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3. 6.>[전문개정, 2026. 8. 18.]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굴착으로 파손된 부분을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3. 3. 6.><개정, 2026. 8. 18.>
4.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시설물의 파손 및 굴착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3. 3. 6.><개정, 2026. 8. 18.>
5. “1차 복구”란 직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3. 3. 6.><개정, 2026. 8. 18.>
6. “2차 복구”란 직접파손부분을 포함한 인접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3. 3. 6.><개정, 2026. 8. 18.>

제3조(원인자부담금)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② 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직접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1차 복구만 시행할 경우에는 2차 복구에 드는 비용을 징수하고, 원인자가 1차 복구 및 2차

복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26. 8. 18.>[단서 전문개정, 2026. 8. 18.]

③ 부담금은 공사 전에 납부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은 타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0.30)<개정, 2026. 8. 1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 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개정, 2026. 8. 18.>

④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6. 8. 18.>

⑤ 비포장도로의 굴착에 따른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가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않는다.[전문개정, 2026. 8. 18.]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0.30)[전문개정, 2026. 8. 18.]

제5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개정, 2026. 8. 18.> ① 굴착에 따른 도로복구공사(비포장도로는 제외한다)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와 대형공사로 인한 대단위 굴착지의 복구를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본문 전문개정, 2026. 8. 18.]<개정, 2026. 8. 18.>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③ 시장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 굴착공사 및 도로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제7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정)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개정, 2026. 8. 18.>

2. 도로의 굴착에 따른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 8. 18.>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 납부된 금액보다 많아진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 시행자에게 재시공을 명하거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제8조(원인자 확인)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② 원인자를 확인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리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적으로 도로를 복구하고, 원인자를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될 경우 부담금을 추징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제9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6. 8. 18.>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